

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,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, 제33조와 「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, 제13조, 제19조에 따라 평가항목·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06월 17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계획의 개요

- 가. 계 획 명 :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
- 나. 위 치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, 덕성리, 천리, 묵리, 시미리 일원
- 다. 계획규모 : 2,282,896m²
- 라. 시 행 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공개개요

- 가. 공개기간 : 2024. 06. 17. ~ 2024. 07. 01. (15일간)
- 나. 공개방법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molit.go.kr>)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<https://www.eiass.go.kr>)
- 다. 공개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

3. 의견제출방법

- 가. 제출기간 : 공개기간 내
- 나. 제출방법 :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(lastblade@korea.kr)
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

4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(044-201-4534)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선교통환경처(055-922-38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